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1. 29.(화) 15:0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차 및 제4차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3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2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비공개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공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5시 03분 】

6.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2019-05-012) (비공개)

【 15시 16분 】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공개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및 방청객을 입장하도록 해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9-05-013~014)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채널에이는 2016년 10월 21일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2017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 매일방송은 2017년 10월 30일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2017년 12월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부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할 것, 또한 2018년 1월 26일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이행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7년 3월과 11월 종편PP 4사에 대한 재승인과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고,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종편PP 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편PP 4사의 2017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12월 12일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였고,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이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승인조건 위반 사항 및 피심인 의견입니다. 콘텐츠 투자계획은 (주)채널에이 · (주)매일방송이,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과 외주사와의 상생방안은 (주)매일방송이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매일방송의 감사제도 개선계획과 외주상생방안은 각각 2018년 12월과 2018년 6월 기준으로 이행되어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별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입니다. 채널에이는 이행실적 점검 보고 당일에 방통위의 제작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타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받아줘야 함.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시설이나 장비 이용은 직접제작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외주제작시설이나 장비를 빌려 사용하는 사업자의 비용은 콘텐츠 투자비로 인정 받는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은 방송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비합리적 내용임.

2018년 3월 31일

제출한 현 사외이사 3인 중 최병민 이사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주)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 대표이사를 맡은 방송전문가이며, 엄봉성 이사도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원으로 방송산업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사인 만큼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에 부합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채널 에이의 경우 콘텐츠 투자실적 인정 여부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방통위에 사전에 제시된 현행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엄봉성 사외이사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하나 방송분야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박용욱 사외이사도 방송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사외이사 2인은 방송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심인이 2018년 1월 26일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개편’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피심인들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방송법 제9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의결주문과 같이 시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1월 중 시정명령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도 방송사에서 임원을 지낸 사람이고, 방송사 경영을 해 본 입장에서 보면, 특히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방통위가 적용하는 이 기준이 충분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 회계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회계처리 원칙상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저도 달리 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축성이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승인 또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어려운 점도 우리가 정책행정기관으로서 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작년 제70차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방송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것으로서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밝혔지만 콘텐츠 투자금액에 대한 인정 여부는 발생주의, 그리고 기간의 구분, 수입과 비용 대응 원칙 등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결

정된 것입니다. 방송시설 및 장비 이용에 대한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이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고, 사전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향후 보완키로 했다는 점도 명백하게 지난번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사무처가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통해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의 의견을 접수했고 회계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매일방송의 경영전문성 또 투명성 확보 방안은 상반기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은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매일방송이 종편PP 사업승인조건의 중대함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안에 동의하고 각 방송사는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충분히 사업자 의견을 우리는 참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 위원님 말씀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생 언론사의 일종의 피할 수 없는 애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 당해 연도만 인정해 줄 것인지, 그 전에 소급해서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제회계처리기준을 따랐다고 하나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2017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용이 인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하고도 지불하지 않았던 돈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중에 날아간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된다, 그것을 다시 인정을 받아서 끼워 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는 일단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피심인 제출의견을 보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로부터 재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위해서라도 실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제작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리고 자료화면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업자 서로 간 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직접제작비, 간접제작비 간 경계선이 모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금년도에 정책연구과제 형태로 해서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지난번 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히 직접제작비, 간접제작비의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예시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나중에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자에게 통지해서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를 받을 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회계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도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했는데 왜 한달치만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방송 같은 경우 신생 언론사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엄격한잣대로 해서 사업자를 옥죄고 있다는 인식을 줄 것이 아니라 뭔가 방송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 현장의 사정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궁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처리 지침대로 하는 것은 경직된

행정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방송의 방송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외이사 3인 중 최병민 이사는 (주)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 대표이사 경력을 가졌다는 데 이분은 방송전문가로서 경력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3인 중 2인이 방송 전문성이 없다고 봤다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부분도 지금 매일에서 피심인 제출의견서를 낸 것을 보면 이것도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설득을 해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과 회계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투자를 했는데 회계상의 잘못으로 귀책사유는 그쪽에 있는 것이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표철수 위원님, 김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풀리도록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리 대처해서 회계를 맞게 제대로 하게 한다든지 그런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송사들이 이런 것을 제출할 때 그런 회계원칙에 맞도록 아까 김석진 위원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미리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 가지 빠뜨렸는데 MBN 같은 경우

사업자 의견은 1년치

사용분을 12월 이전에 미리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월별로 미리 분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가 낸 전문가들로부터 나중에 의견 받을 데에 따르면 시점이 12월 전에 확정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이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나 사무처 입장은 12월 전에 이미 다 확정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자는 12월 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월별로 낼 수 없었다, 12월에 가셔야 비로소 확정이 됐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부분은 클리어가 됐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부분은 현장실사를 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그 전에 4월 정도에 이미 다 확정되어서 금액 자체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만 지급이 12월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르면 그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12월분만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회계사의 의견이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부위원장

-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기들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향후 방송사들이 준수해야 할 회계처리원칙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제회계처리기준만이 아니라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확하지 않았던 회계처리기준으로 인해 등의 이런 몇몇 가지 부분들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지금 제시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오히려 더 불명확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보다 더 원칙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정확한 업무처리와 회계처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방송의 경우 12월에 확정된 것, 그것이 4월이냐, 12월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어차피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러면 1년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분배할 때는 명확하게 월별 분배가 되어 있고, 방통위가 산정한 기준점은 한 달간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12월이냐, 4월이냐는 그다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방송사들 입장에서 억울하다면서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방통위가 이번 기회에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고삼석 위원님께서 떠나시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9-05-015~024)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등을 위반한 10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조사배경은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생활밀접형 O2O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3개 업종 21개 사업자입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5개사 그리고 O2O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 10개사, 스타트업 6개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방통위와 KISA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11월에 사전통지 후 의견접수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 21개사 중 (주)오케이코인코리아 등 12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한국블록체인거래소 등 9개사는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주)오케이코인코리아, 그리고 (주)코인링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이고, 금융권 O2O 사업자는 (주)국민은행 등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의 8번 (주)그린카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9번의 애픸스(주)와 11번의 (주)텐핑거스는 커플앱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주)하우스미디어는 인테리어와 생활용품 판매서비스 사업자입니다. <다> 위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위반 내용입니다. 접근권한 부여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주)신한카드,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않아 위반한 사업자는 (주)하우스미디어 등 2개사입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집닥(주) 1개사입니다. 그리고 망분리하지 않은 사업자가 (주)그린카 1개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를 위반한 사업자는 (주)오케이코인코리아 등 6개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위반한 사업자는 하나카드(주), (주)우리카드 2개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 위반을 한 사업자는 (주)우리카드 1개사, 이용자 권리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주)국민은행 등 3개사가 되겠습니다. <5> 피심인 제출의견입니다. (주)국민은행은 SNS소셜 로그인 이용자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채팅 및 이메일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소비자정보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피심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채팅, 소비자 정보포털 등의 방법은 개인뱅킹고객상담, 고객불만 등 처리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출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은 접속 기록 보관 및 확인·감독 의무위반 지적과 관련해서 DB접근기록은 DB작업내역에 대한 신청/승인/점검 작업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고, 6개월 동안의 로그 기록과 DB의 작업내용을

대조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DB에 접속하여 조회, 정정, 삭제 등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은 수용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DB는 접속기록을 남기는 일반적인 DB와는 달리 DB의 접근제어 프로그램에서 접속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DB작업관리대장에 시간, 작업자 등을 기록하여 결재를 받는 절차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시에서 정한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도록 한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우리카드의 경우 첫 번째 처분사유인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위비마켓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초기부터 로그인 시 이용자의 아이디어를 서버로 전송할 때는 SSL을 통해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있었으며, 주문 및 비밀번호 수정 등 주요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하여 암호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조사 당시 해당 서비스의 전송구간에 이용자의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전송구간 암호화를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처분사유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와 관련해서 위비마켓은 회원의 탈퇴 시 연계정보인 CL, 아이디를 제외한 회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있고, 위비마켓의 아이디는 거래기록이나 청약 철회 등 거래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거래에 관한 기록은 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별도의 주문관리 테이블에 이용자 아이디, 이메일 등을 포함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18,386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카드(주)는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한 행위와 관련해서 금융권에서는 이용자 아이디를 송수신할 때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감독 기관의 유권해석을 준수해 왔고, 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으며,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단순 과실로 이용자의 피해도 없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점검한 해당 서비스는 금융관련 서비스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통신서비스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달리 모든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그린카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망분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당시 지적받은 인력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망분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본인이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정보취급자로 잘못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파일 다운로드 권한자, 정보시스템 운영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 대해서는 망분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외부 메일 차단 등 망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현장조사 당시 지적된 인력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닌 '정보보호관리자'였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망분리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출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신한카드 등 7개사는 위반 사항을 개선 중이거나 완료했으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6> 시정조치(안)입니다. 시정 명령 대상은 오케이코인코리아 등 10개 사업자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조금 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그린차와 우리은행 등 2개사에 대하여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견을 수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에 해당해지만 않는 것으로 판단,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주)오케이코인코리아 등 10개 사업자 모두에게 부과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오케이코인코리아 등 9개 사업자입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 관련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가 2개인 하우스미디어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의 감경은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주)신한카드, 하나카드(주), 애피스(주), 집닥(주), (주)텐핑거스, (주)하우스미디어 등 6개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고,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우리카드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 소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오케이코인코리아와, 코인링크 등 2개사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신한카드 등 6개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각 부과하고, 오케이코인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700만원을 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열람·제공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방법 위반을 (주)오케이코인코리아, (주)국민은행, 집닥(주) 등 3개 사업자입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과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주)국민은행, 집닥(주) 등 2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고, 소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주)오케이코인코리아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주)국민은행, 집닥(주)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각 부과하고, (주)오케이코인코리아에 대해서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별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사업자 총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별첨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주)우리카드는 조사 당시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별조치항에 해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유건수가 5만건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난 '17년과 '18년 위원회 회의에서 시정명령으로 갈음한 사례를 따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시정조치 통보 후 금년 상반기 중 이행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여러 사례에 대해 우리가 행정처분을 여러 가지 했는데, 특히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일이 아직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런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도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궁금합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이번 점검대상은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제휴 형태로 하고 있는 O2O서비스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인데 금융기관 고유의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O2O서비스는 금융기관들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제휴하는 사업자들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런 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O2O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조사한 바가 있는데 금융기관이 서비스한 O2O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O2O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금감원에서도 별도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처분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방통위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한 것이 이번 조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이번에 심의·의결서를 통보할 때 해당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별도로 O2O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방통위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기획조사입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체와 금융업, 그리고 스타트업, O2O 사업자 가운데 중요한 사업자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무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국민은행이 SNS소셜 로그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방법을 가입 시보다 어렵게 해서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위반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입 시보다 어렵다, 쉽다는 위반의 판단기준은 무엇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개인정보와 관련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그보다는 더 쉽게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자의 경우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가입은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탈퇴를 하거나 동의·철회 등 여러 가지 자기의 개인정보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를 별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여러 가지 채팅 상담이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채팅 상담의 경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객 개인뱅킹 상담이나 혹은 부동산 금융서비스를 위한 상담을 위한 채팅창구이고 이메일을 통해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 협조를 받아서 직원이 해주어야 개인정보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은 해당 직원에게 자기 개인정보 전체를 다시 한 번 알려 줘서 드러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를 들어 제가 이용자라면 제 주소가 바뀌었으면 제가 직접 온라인상에서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고객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바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중요한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대형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카드의 경우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점, 신한카드의 경우 배송이 완료되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입점업체들이 주문·배송 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들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금융권의 부대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허점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금융사업자들의 부대 서비스, 예를 들면 부동산, 쇼핑, 여행 등 웹사이트나 혹은 앱에서 일반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즉 정보통신망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현재 금융권에서는 이용자 아이디를 송수신할 때 암호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암호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송신해 왔다고 사업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형 은행계 카드사들이 금융서비스를 위해서 이용자 아이디어를 송수신할 때 이것이 암호화

하지 않고 보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별도의 금융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기준에 암호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개인신용정보 등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망법은 열거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는 다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몇 개만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금융서비스가 아니고 카드사나 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서비스, 또는 위비마켓 등 쇼핑몰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송수신해야 할 때는 암호화해야 하는 것이 저희 망법상 규정입니다.

○ 허 육 부위원장

- 그렇지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관해서 부대서비스에 이러한 사각지대, 즉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방통위 조사를 계기로 대형 금융사들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부대사업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드립니다. 이밖에 가상통화 거래를 준비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은 그동안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했었고 향후에 지속적인 사후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끝으로 스타트업 서비스 역시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이제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선행투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처분 결과를 스타트업 사업자들에게 통보할 때도 이 점을 명확하게 강조해 주시고, 관련협회나 인큐베이팅 기관에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앞서 두 분 말씀에 전폭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보태겠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점포수가 가장 많은 초대형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도 2만명에 육박하고 연매출액이 19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초대형 방방곡곡에 국민은행에서 준법의식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심인 의견을 들어보면 로그인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정정을 개인정보 수집할 때보다 쉽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이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어디입니까? 은행이 고객서비스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서비스업체인데 고객이 일일이 정보를 동의하거나 내지는 정정할 경우에 일일이 메일을 보내서 관리자의 소위 승인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고객서비스가 아니지요. 왜 이런 인식은 극히 서비스 수준이 낮은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권리 침해에 국민은행이 법을 위반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O2O서비스가 뭡니까? 가장 생활 밀접형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에서 구멍이 새고 있다면 진정한 초대형 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각종 카드회사, 대형 금융사가 운영하는 카드사인데 여기도 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반했는지 오히려 항변하고 있습니다. 피심인 의견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금융권 업무 특성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단순 과실이다, 그래서 이용자 피해가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피심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망법 적용을 받아서 망법상 분명히 이것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해 줘도 자기들이 뭐가 위법이냐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이후에 우리가 불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이 설득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피심인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금융기관들이 부주의한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사 직후에 금융기관들은 즉각적으로 시정 완료를 다 해서 현재 모두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이후에 심의·의결서는 아직 통보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뒤에 금융기관의 반응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소형 중소 영세업체도 지금은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이것이 덤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 금융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위법사항조차도 뭐가 위법하느냐고 오히려 항변할 정도 같으면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경종을 울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도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1회 위반에 1,000만원인데 우리가 50% 깎아서 500만원밖에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19조원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대형 금융사가 500만원 과태료 부과했다고 해서 경종이 되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벌칙조항에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업자를 다 빼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특히 O2O서비스는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온 국민이 생활밀착형, 국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용서비스인데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의 가치로 치는 대형 금융사들이 일제히 걸려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저는 사업자에게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위법사실이 없도록 하고, 기획조사인데 전수조사를 하면 다른데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잘 보도가 되어서 금융기관들이 다 이런 위법사항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개인정보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를 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빅데이터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과도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도 못 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06분 폐회 】